

담	당	결	재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고객(이하 "위탁자")과 우리은행(이하 "수탁자")은 다음과 같이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객(위탁자)와 은행(수탁자)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뒷면(첨부된)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고객별로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신탁재산의 미운용시 고유계정대로 운용되므로, 운용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운용시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음)



■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필수	최초 신탁금액	금 원	(₩)
	신탁기간	개월	※ 월단위 (최소 36개월 이상)
	만기해지금 수령계좌		※ 당행 본인 입출금계좌 (MMDA 등 제외)
	운용내역통지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해피콜	<input type="checkbox"/> 유선해피콜(☎1599-4200)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해피콜 (LMS URL)	
선택	비밀번호 재사용	<input type="checkbox"/> 만기해지금 수령계좌 동일 비밀번호	성명 : _____ 서명(인)

■ [별표1]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즉시매수 / 예약매수 / 적금매수]

운용상품종류	운용상품명	운용금액(원) / 운용비율(%)	운용상품위험도

※ 본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부터 해지 시까지 금융회사 중복가입여부,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한도 확인 (가입시점 및 매 분기 단위 조회) 등을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서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계약서류 등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탁자

■ 수탁자

주 소 : _____

 생년월일 : _____
 성 명 : _____ 서명(인)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주식회사 우리은행
 _____ 서명(인)



은 행 보 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약관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의 고객(이하 "위탁자")과 우리는 행(이하 "수탁자")간에 특정금융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하고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융투자업자를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인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정저축 또는 정기적립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정저축 및 정기적립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인 것

$$2\text{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 / \text{경과한 연수가 4년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text{누적납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 하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자
③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만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두 번 초과하여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놓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의 초과하는 자 제외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 대한 최초로 신탁하는 신탁금액은 금 1천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3년 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정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탁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달일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탁기간이 종료된다.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1]의 특정금융투자업자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방식에 따라 신탁재산의 인수를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약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주1)
3. 환매조건부채권
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5. 예금,적금,예탁금^(주2)
6. 국,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7. K-OTC주식(중소, 중견기업)
8. K-OTC주식(중소, 중견기업)에 관한

주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채권

(주2)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을 종료해지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모든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④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운용내역 확인 등)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법정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3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후위로 납입한다. 이 경우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이라 함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 위탁자가 지정한 신탁재산별 일일 평가금액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text{신탁보수} = \text{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times \text{운용상품별 연 보수율}$$

※ 운용상품별 신탁보수율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채권	연 0.2%
파생결합채권(파생결합채권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 현금성 자산(고유계좌): 연 0.1%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지급일 부터 제3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종료일일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지급한다.

1.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일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2.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그 밖의 날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의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부당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위탁자의 퇴직
3. 사망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태·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중도해지)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계좌를 차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계좌를 차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를 불허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정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제16조에 따른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소득을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소득은 추정일 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신탁보수 및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원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은 운용원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원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원상대로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보수의 1/2로 계산한다.

⑤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이 만기가 되는 경우 신탁계좌를 차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계좌를 차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정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 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9조(최종계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을 서신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②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좌에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관하여 계약사유를 제공받은 날(계약사유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일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금전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준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규 대비 등)을 변경예정일 20일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개세 조류규정의 제 개정에는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기준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규 대비 등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각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약관(이하 본 항에서는 "약관"이라 함)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급하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감사·거래일지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관한 효력이 있을 때

제25조(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법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관계법규를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대소액투자연계법(이하 "관계법규"이라 한다)를 준수한다.

제28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관계법규 등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중 정자금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1조(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부치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특정금융투자업 운용지시서

귀사와의 특정금융투자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신탁재산 운용방법 (약관 제6조제1항)	세부내용	위탁자확인
운용지시는 별도로 작성하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 운용지시서에 따릅니다.		

제10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3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후위로 납입한다. 이 경우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이라 함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 위탁자가 지정한 신탁재산별 일일 평가금액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지급일 부터 제3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지급한다.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의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부당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① 천재지변
② 위탁자의 퇴직
③ 사망장의 폐업
④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태·질병의 발생
⑤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중도해지)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계좌를 차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계좌를 차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를 불허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정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담	당	결	재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고객(이하 "위탁자")과 우리은행(이하 "수탁자")은 다음과 같이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객(위탁자)와 은행(수탁자)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뒷면(첨부된)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고객별로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신탁재산의 미운용시 고유계정대로 운용되므로, 운용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운용시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음)



■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필수	최초 신탁금액	금 원	(₩)
	신탁기간	개월	※ 월단위 (최소 36개월 이상)
	만기해지금 수령계좌		※ 당행 본인 입출금계좌 (MMDA 등 제외)
	운용내역통지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해피콜	<input type="checkbox"/> 유선해피콜(☎1599-4200)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해피콜 (LMS URL)	
선택	비밀번호 재사용	<input type="checkbox"/> 만기해지금 수령계좌 동일 비밀번호	성명 : _____ 서명(인)

■ [별표1]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즉시매수 / 예약매수 / 적금매수]

운용상품종류	운용상품명	운용금액(원) / 운용비율(%)	운용상품위험도

※ 본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부터 해지 시까지 금융회사 중복가입여부,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한도 확인 (가입시점 및 매 분기 단위 조회) 등을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서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계약서류 등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탁자

■ 수탁자

주 소 : _____

생년월일 : _____

성 명 : _____ 서명(인)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명(인)



고객보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약관

원금
손실가능
상품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의 고객(이하 "위탁자")과 우리는 행(이하 "수탁자")간에 특정증권신탁계약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명칭 1개의 계좌만 부여할 것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증권신탁계좌를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인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정기적립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정기적립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인 것

$$2천만원 \times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div 12 \div 12$$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 함)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함)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원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만19세 미만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만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이 있는 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원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연세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농업(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 또는 연장일 이후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 대한 최초 신탁하는 최대 신탁금액은 금 1천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3년 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정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탁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연일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탁기간이 종료된다.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1]의 특정증권신탁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방식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를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인 경우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호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약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주1)
3. 환매조건부채권
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5. 예금, 적금, 예탁금(주2)
6.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7. 주권상장법인인의 주식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인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9. K-OTC주식(중소, 중견기업)에 한한다

주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채권
 주2)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을 지칭하여야 하며, 신탁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모든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①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좌를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운용내역 확인 등)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법정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원본과 이익의 보관)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3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후취로 납입한다. 이 경우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이라 함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 위탁자가 지정한 신탁재산별 일일 평가금액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text{운용상품별 신탁보수} = \text{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times \text{운용상품별 연 보수율}$$

* 운용상품별 신탁보수율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채권	연 0.2%
파생결합채권(파생결합채권 제외), ETF, FP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 현금성 자산(고유계좌): 연 0.1%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좌를 체결한 날 또는 적전 보수 지급일 부터 제3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지급한다.

1. 신탁계약 해지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2.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그 밖의 날
3. 신탁이익의 계산과 기간은 신탁계좌를 체결한 날 또는 적전 이식지급일 제1항에서 정한 이식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5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위탁자의 퇴직
3. 사망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제17조(중도해지)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계좌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신탁계약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거나 기타 사유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신탁계좌를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격조정이 불가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제16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소득을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가납입하며, 해당 소득은 추정이익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제2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신탁보수 및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위탁자가 신탁계좌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계좌를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계좌를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보유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계좌를 운용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운용현상대로 운용되는 신탁계좌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류하려고 하더라도 신탁계좌를 운용현상대로 보유 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류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주식을 한다.
4.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계좌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계좌를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보수의 1/2로 계산한다.
5.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이 만기가 되는 경우 신탁계좌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계좌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더라도 가격조정이 불가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좌의 만기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9조(회생절차)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② 최종계좌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최종계좌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좌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최종계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체결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일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리익률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금전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보상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시점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준 금액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규 대비표 등)을 변경예정일 20일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과세 업무규정의 제거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대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기준 금액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규 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계약기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약관(이하 본 항에서는 "약관"이라 함)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의사·거래인입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관한 의문 발생
 3. 제25조(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류 및 기타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유효보존 또는 이동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법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관계법규를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라 함)을 준수한다.

제28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과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관계법규 등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른다.
 2. 이 계약에 관한 중 점자금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1조(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계좌를 교부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특정증권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의 특정증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신탁재산 운용방법 (약관 제6조제1항)	세부내용	위탁자 확인
운용지시는 별도로 작성하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 운용지시서에 따릅니다.		